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685

2026. 2. 23.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6. 2. 23. 운영위원장

나. 상정의결

-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6. 2. 23.)

“원안가결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)

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연임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흡함으로 인한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를 예방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가. 임기 단서에 연임제한 규정 마련 (안 제6조)

나. 조 제목 변경 및 자문료 건당 지급으로 개정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: 법제처, 법령 입안·심사 기준

나. 예산 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　　타: 없음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6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7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: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위원회안)

의 안 번 호	685

제안연월일: 2026. 2. 23.
제 안 자: 운영위원장

1. 제안 이유

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함에 있어 연임 여부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흡함으로 인한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를 예방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가. 임기 단서에 연임제한 규정 마련 (안 제6조)

나. 조 제목 변경 및 자문료 건당 지급으로 개정 (안 제8조)

3. 참고 사항

가. 관계 법령: 법제처, 법령 입안·심사 기준

나. 예산 조치: 해당 없음

다. 기 타: 없음

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의 제목 “(고문료 등)”을 “(자문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매월 2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”를 “건당 20만원(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)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임기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.	제6조(임기) ----------. ----------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제8조(고문료 등) ① 입법·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	제8조(자문료 등) ① ---------- 건당 20만원(부가세 미포함 금액)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.
② ~ ③ (생 략)	② ~ ③ (현행과 같음)